

| | |
|--------------|----------------|
| 의안번호 | 제 51 호 |
| 의 결 연 월 일 | 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발 의 자 | 이상정 의원 등 7인 |
| 발의연월일 | 2018년 10월 2일 |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정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51 |
|----------|----|

발의연월일 : 2018년 10월 2일

발 의 자 : 이상정·박우양·임영은·박문화·
이상식·하유정·황규철 의원

1. 제안 이유

- 생산적 일손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대하고 유공자 포상 등의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추진된 사업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업의 적정추진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원 대상을 도내 한정 및 참여 대상 확대(안 제2조)
 - 충청북도 소재 농가 및 중소기업으로 수정
 - 도시지역 등 유희인력의 정의시 도민 한정 내용 삭제
- 생산적 일손봉사의 범위 한정(안 제3조)
 - 1일 4시간 자발적 참여 일손봉사
- 농가 및 중소기업의 실비 지급규정 삭제(안 제5조, 제6조)
- 실비지급 관련 강행규정의 완화(안 제7조)
 -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 할 수 있다’ 로 개정
- 생산적 일손봉사 진흥 규정 신설(안 제8조의 2)
 - 도지사의 행·재정적 지원 및 참여자 포상 규정 신설

3. 조례안 : 불 입

4. 관계법령 발취 : 해당 없음

5. 예산조치 : 불 입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일자리기업과와 협의

7. 입법예고 : 2018.9.20. ~ 2018.9.29(10일간, 특이의견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가 및 중소기업”을 “충청북도 소재 농가 및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정액의 실비를 받고 자발적”을 “자발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충청북도·시군 및 농가·중소기업”을 “충청북도 및 시·군”으로 한다.

3. “도시지역 등 유희인력”이란 생산적 일손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있는 도시지역 등의 유희인력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생산적 일손봉사의 범위) 생산적 일손봉사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생산적 일자리에서 1일 4시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손봉사에 한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실비 등 지급절차) ① 생산적 일손봉사를 수행하는 시장·군수 및 기관·단체는 생산적 일손봉사 사실을 확인한 후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실비를 지급받은 경우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를 수행한 시장·군수 및 기관·단체 등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기관·단체 등은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생산적 일손봉사 진흥) ① 도지사는 생산적 일손봉사의 자발적 참여 촉진을 위해 시·군 및 기관·단체 등 사업추진 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개인, 단체,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산적 일자리”란 <u>농가 및 중소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말한다.</u></p> <p>2. “생산적 일손봉사”란 도시지역 등 유희인력이 농가 및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에서 <u>일정액의 실비를 받고 자발적으로</u> 제공하는 일손봉사를 말한다.</p> <p>3. “도시지역 등 유희인력”이란 <u>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있는 충청북도 도민 중 생산적 일손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지역 등의 유희인력을 말한다.</u></p> <p>4. (생략)</p> | <p>제2조(정의) ----- -----.</p> <p>1. ----- <u>충청북도 소재 농가 및 중소기업</u> -----.</p> <p>2. ----- ----- ----- --- <u>자발적</u>----- ----- --.</p> <p>3. “도시지역 등 유희인력”이란 <u>생산적 일손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있는 도시지역 등의 유희인력을 말한다.</u></p> <p>4. (현행과 같음)</p> |

| 현 행 | 개 정 안 |
|---|---|
| <p>5. “실비”란 <u>충청북도·시군 및 농가·중소기업이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교통비·식비 등의 실 경비를 말한다.</u></p> | <p>5. ----- <u>충청북도 및 시·군</u> ----- ----- ----- -----.</p> |
| <p><u>제3조(생산적 일손봉사의 종류)</u> <u>생산적 일손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전일 일손봉사 : 생산적 일자리에서 1일 8시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손봉사</u></p> <p>2. <u>반일 일손봉사 : 생산적 일자리에서 1일 4시간 정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손봉사</u></p> | <p><u>제3조(생산적 일손봉사의 범위)</u> <u>생산적 일손봉사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생산적 일자리에서 1일 4시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손봉사에 한한다.</u></p> |
| <p><u>제5조(지원대상) 생산적 일손봉사의 지원대상 농가 및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다.</u></p> <p>1. (생 략)</p> <p>2. <u>일정액의 실비를 부담할 수 있는 농가·중소기업</u></p> <p>3. (생 략)</p> | <p><u>제5조(지원대상) -----</u>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삭 제></u></p> <p>3.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제6조(실비 규모 등) ① ~ ② (생략)</p> <p>③ <u>농가 및 중소기업은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④ <u>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비의 종류와 규모,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u></p> <p>⑤ (생략)</p> | <p>제6조(실비 규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④ <u>제1항 및 제2항</u>----- ----- ----- -----.</p> <p>⑤ (현행과 같음)</p> |
| <p>제7조(실비 등 지급절차) ① <u>생산적 일손봉사를 수행하는 시장·군수 등 기관·단체와 생산적 일손봉사를 지원받는 농가·중소기업은 생산적 일손봉사 사실을 확인한 후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 <p>제7조(실비 등 지급절차) ① <u>생산적 일손봉사를 수행하는 시장·군수 및 기관·단체는 생산적 일손봉사 사실을 확인한 후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③ <u>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또는 농가·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실비를 지급받았거나 지급하였을 경우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를 수행한 시장·군수 등 기관·단체 및 농가·중소기업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등 기관·단체는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u></p> <p>④ (생략) <u><신설></u></p> | <p>③ <u>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실비를 지급받은 경우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를 수행한 시장·군수 및 기관·단체 등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기관·단체 등은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 <u>제8조의2(생산적 일손봉사 진흥)</u></p> <p>① <u>도지사는 생산적 일손봉사의 자발적 참여 촉진을 위해 시·군 및 기관·단체 등 사업추진 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② <u>도지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개인, 단체,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u></p> |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유휴인력을 일손부족 농가·중소기업에 연결하여 지역 인력난 해소,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의 행·재정적 지원, 유공자 포상 등 진흥

2. 비용 발생 요인

- 생산적 일손봉사 유공자 표창, 사례발표, 의견청취 등 행사 경비

3. 관련조문

- 안 제8조2(생산적 일손봉사 진흥)
 - 도지사는 생산적 일손봉사의 자발적 참여 촉진을 위해 시·군 및 기관·단체 등 사업추진 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 도지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개인, 단체, 공무원 등의 포상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생산적 일손봉사 유공자 표창, 사례발표 등 행사경비
- 나. 추계의 전제 :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등 100여명(행사 2회)
- 다. 추 계 결 과 : '19년부터 연 20,000천원 정도 소요
-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 구 분 | 계 | 1차년도 (2019년) | 2차년도 (2020년) | 3차년도 (2021년) | 4차년도 (2022년) | 4차년도 (2023년) |
|---|---------|-----------------|-----------------|-----------------|-----------------|-----------------|
| 세 출 | 10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생산적 일손봉사 유공자 표창, 사례발표 무대설치 등 행사경비 | 10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연간 소요비용 : 20,000천원정도(표창패, 사회적, 무대설치, 사례발표 등 행사경비 2회)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일자리기업과장 이기영(☎ 220-3350)